긴급입찰 사유서

1. 사업개요

가. 사 업 명: 2026년 화성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 AR피구대회

나. 사업기간: 계약체결일 ~ 2026. 8. 14.(금)

다. 사업금액: 150,000,000원(VAT포함)

라. 계약방법: 제한경쟁입찰(협상에 의한 계약)

2. 긴급입찰 사유

가. 필요성

○ 본 사업은 단순 행사 개최가 아닌, 화성특례시 학교 및 기관 방문을 통한 선수 선발(찾아가는 AR 피구)과 선발 청소년 대상의 집중훈련이 순차적으로 연계된 복합 과업으로 단계별 과업의 유기적 수행을 위해 즉각적인 과업 착수가 요구됨.

○ 다수의 화성특례시 청소년과 시민들이 AR기술을 접할 수 있는 여름방학이 사업 운영의 최적기이며, 학사일정과 연계된 사업 특성상 학기 종료(7월 중순) 전 관내 학교 및 유관 기관과의 원활한 일정 협의와 현장 운영을 완료해야 하므로 안정적인 과업 수행을 위한 신속한 추진이 필요함.

○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력이 요구되는 사업 특성상, 일반 입찰 공고(20일) 적용 시 5월 말 이후에나 착수가 가능함. 특히 제안서 기술평가 및 업체 선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입찰 유찰이나 재공고 등 예기치 못한 행정 절차 지연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고, 선수 선발・집중훈련・홍보를 위한 최소한의 실무 준비 기간(3개월)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함.

⇒ 긴급 입찰을 통해 100만 화성특례시의 위상에 부응하는 성공적인 대회를 개최하고자 공고기간을 불가피하게 단축하고자 함.

나. 법적근거

○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2조의2, 제35조

제32조의2(구매규격 사전공개)

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구매규격을 사전공개 하는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5일간 공개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**3일간 공개**한다.

제35조(입찰공고의 시기)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.

1.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
2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3.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4. **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·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**
5. **그 밖에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을 긴급히 입찰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**

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에 따른 규격입찰이나 기술입찰, 제43조와 제44조에 따른 **협상에 의한 계약** 또는 제44조의2에 따른 경쟁적 대화방식에 의한 계약이 **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**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**10일 전까지 공고**할 수 있다.